

제 169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헌법학과 국제법학의 대화

강연자: 야마모토 하지메 (山元 一) (게이오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게이오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의 야마모토 하지메 교수의 세미나가 4월 24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헌법학과 국제법학의 대화'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의 헌법과 안전보장은 일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도 관계가 깊다고 설명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우선 일본의 새 헌법은 일본의 패전 후 미군에게 점령당하던 시기에 새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제작되었을 시기에 일본이 아닌 더글라스 막가사가 항목을 만들어 미군에게 새로 제작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군대를 없애는 것이었다. 새 헌법의 제작 당시 미군은 일본이 천황제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 당시 미군의 의견이었다고 야마모토 교수는 설명하였다.

결국 일본의 새 헌법은 평화주의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다시 태어났지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군대를 없애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의 헌법과 자위대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계와 학술계에서도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을 정도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일본 헌법 제9조에서는 '우리 나라(일본)를 자기 방어하는 전제에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이용한다'라고 기재되어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헌법에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는 위협을 당할 시 자기 방어를 할 자격이 있다' 라고 주장해왔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일본 헌법 제9조에 실린 자위대의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오늘날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야마모토 교수는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국제협력, 평화협력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 군사파병을 보낼 경우, 자위대 특성상 전쟁 지역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파병을 가는 것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9.11 테러 당시 미국으로 파병을 보내는 것에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렇듯 자위대의 활동은 일본의 헌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정부가 가능하다고 해도 헌법 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나라의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의 자위대는 본국을 지키기 위함으로 있는데 파병을 본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어긋나는 일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아베 총리가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베는 완전한 개정이 아닌 헌법의 해석을 개정하자고 주장한다고 한다.

야마모토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자위대 활동으로 인한 여러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은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을 도와줄 때 그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보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 질의응답

질문: 헌법개정에 대해 고바야시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에 관한 야마모투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 고바야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그러나 96조 개정에 대해서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96조가 개정되는 것은 법률이 바뀌는 것이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고바야시설과 비슷한 의견으로는 96조는 헌법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바꾸기 어렵다. 96조를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지만, 불가능이라고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프랑스 헌법에 의하면 프랑스 헌법학자들은 헌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냐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